

# 조사 보고서 (별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첨부2. 핵심 회원 추정 자료**

1. 간부진

**2016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2016. 3. 1.기준)**

			업무	무리미	비고
<b>회장</b>	이규진	18			
<b>운영위원 (6) 가나다순</b>	이	16	연구회 운영 방안 제시, 논의		
	고	23			
	최	28			
	박	30			
	방	33			
	진	39			
<b>간사</b>	정	27			
<b>총무(팀장) (5) 가나다순</b>	나	32	학술	이 (34), (35), 유 (39), 강 (41), 최 (41), 박 (42), 박 (43)	팀장에게 팀 구성 자율성 보장
	김	32	기획	윤 (34), 김 (36), 박 (37), 이 (37), 홍 (38), 공 (40), 조 (40), 김 (37)	
	진	36	홍보	윤 (38), 문 (37), 김 (42), 김 (40)	
	이	31	정책	김 (30), 송 (38)	
	이	37	대외협력	정 (39), 김 (42), 서 (39), 이 (41)	
<b>분과위원회 (소모임) 위원장 무순</b>	강	35	법판론	오 (39)	○분과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무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강	35	독서모임	박 (39)	
	임	25	인산회	오 (39)	
	안	34	난민	하 (38)	
	김	32	표현의 자유	류 (40)	
	김	25	소수자 인권	윤 (38)	
	강	35	문화예술	여 (42)	
김	30	인사모	박 (31)		
<b>편집위원회 위원장</b>	박	36	재판자료집 발간	임 (32)	○위원장, 편집위원은 운영위 거쳐 임명 ○위원장에게 구성 및 운영 자율권 보장
<b>지역위원회 (지역분과위) 위원장 무순</b>	송	24	광주전남	공 (40)	○지역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무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대전	조 (40)	
	김	29	부산	김 (37)	
			서울중앙	○매뉴얼모임: ○점심모임:	
		서울남부			

2. 인사모 회원

가. 최초 주도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4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사퇴) ·우리법연구회 회원
2	이○○	26기	서울동부	·인사모 최연장자(좌장격)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우리법연구회 동조
3	이○○	27기	수원	
4	이○○	27기	서울고	·우리법연구회 회원
5	정○○	27기	연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6	김○○	30기	광주	·인사모 분과위원장 ·우리법연구회 회원
7	김○○	30기	대구	
8	김○○	30기	전주	·연구회 창립 주도 ·우리법연구회 동조
9	박○○	31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 ·15.04.16. 코트넷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박○○	31기	서울고	·인사모 결성 최초 제안 ·우리법연구회 회원
11	신○○	31기	서울중앙	
12	이○○	31기	대법원	
13	송○○	34기	서울중앙	·16.02.01. 코트넷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 건의문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나. 후속 가입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5기	인천	·14.12.15. '횡성한우' 판결 비판으로 정직 2월 ·14.09. 원세훈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글 게시
2	이○○	32기	서울중앙	·사법행정 책임자들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2015년 평정 기재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3	류○○	40기	춘천	·15.05.17. 박○○ 판사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글에 대한 지지글 게시

다. 동조그룹(추정)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사○○	23기	서울중앙	·16.02.22. 의원면직 ·우리법연구회 회원
2	문○○	37기	서울중앙	
3	홍○○	38기	서울중앙	

라. 창립회원

순번	법관	기수	가입일	현 소속	비고
1	김○○	14	2011-08-31	대구	
2	김○○	15	2011-08-31	춘천	우리법연구회 회원
3	김○○	22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4	김○○	24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5	문○○	26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6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우리법연구회 동조
7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8	이○○	2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9	이○○	27	2011-08-31	서울고등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김○○	28	2011-08-31	대전	
11	선○○	28	2011-08-31	수원	
12	박○○	28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13	허○○	28	2011-08-31	의정부	
14	최○○	28	2011-08-31	인천	
15	이○○	29	2011-08-31	광주	
16	최○○	29	2011-08-31	서울가정	
17	신○○	29	2011-08-31	청주	
18	이○○	30	2011-08-31	대법원	
19	김○○	30	2011-08-31	부산가정	
20	한○○	30	2011-08-31	부산	
21	김○○	30	2011-08-31	전주	우리법연구회 동조
22	김○○	31	2011-08-31	대전가정	

23	강○○	31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24	이○○	31	2011-08-31	서울중앙	
25	박○○	32	2011-08-31	대구가정	
26	이○○	32	2011-08-31	서울중앙	
27	정○○	33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28	김○○	33	2011-08-31	서울중앙	
29	서○○	35	2011-08-31	춘천	
30	전○○	3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31	남○○	39	2011-08-31	전주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중략)

## 3. 결정 내용 ⇨ 재항고 인용 여부

### 가. BH 입장 분석

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1)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나)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함

다)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

(1)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ex.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된다

### 나. 대법원 입장 분석

가)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음

(1) 분명 중요 사건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라는 하나, 사법부 입장에서 최대 현안으로 보는 것은 아님 ⇨ 많은 사건 중 하나(one of them)에 불과함

나) 현재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이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1) 특히 BH 주요 보좌 라인의 親검찰·법무부 성향으로 인하여 BH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 법무부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다. [검토] 재항고 인용 결정 ⇨ 양측에 원인의 결과가 될 것임

		BH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재항고 인용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가)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임

(1) 재항고 인용의 경우 양측에 손실은 크지 않을 것임

(가) BH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데에 별다른 손해·출혈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 아님

(나) 대법원 ⇨ 전교조 사건 선고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님

#### 4. 결정 시점

##### 가. 고려 사항

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 관한 분석 필요

(1) 결정 시점에 따라 劇的 效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

(2) BH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사법최고기관이 어려운 국정 현안에 얼마나 조력·협력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 기관을 평가할 것임 ⇨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가) 평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부정적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임

나) 주요 사법 현안의 처리 일정 최우선적 고려

(1) 특히 함께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상관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음 ⇨ 그러나 연내 선고 가능성 높음

(가) 다만, 12. 11.~14.경에 강일원 재판관의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목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12. 18.(목) 또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12. 10.(수)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됨

(나) 한편,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데, 선고기일 얼마 전에 통지를 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함 ⇨ 일단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확인해주기로 하였고, 여타 비공식적인 확인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

(3) 한편, 본 사안과 관련 사건인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가)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 효과 반감 우려

다) 기타 주요 정치 일정 고려

(중략)

##### 나.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가) 최우선 고려 요소인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 이전과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함

(1) ①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은 12월 중순[12. 10.(수) 또는 12. 18.(목)]일 가능성이 높고, ②그 결론은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제함

나) [I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

(1) 아직 현재의 선고 이전이므로 대법원의 긍정적 이미지가 독자적으로 부각될 수 있음

(가) 단,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일수록 주목도도 높아지는 것임[High Risk, High Return] ⇨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결정하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2) 다만, 이후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에 가리어 긍정적 효과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가) 하지만 逆으로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측의 반발도 통진당 선고와 함께 가라앉을 가능성이 큼 ⇨ 오히려 통진당 선고에 임박한 직전 시점으로 결정 시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됨

(3)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12월을 넘어서지 않는 시점에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함

다) [2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후에 결정

(1) 만일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결과가 BH·법무부의 기대와 달리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극적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음

(가) 현재 현재 수뇌부는 검찰 출신, 특히 이른바 ‘공안 검사’ 출신임 ⇨ 박한철 소장, 안창호 재판관

(나) BH·법무부와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2)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사건의 무게·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이후에는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이 그다지 주목받기 어려움

(3)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이후에는 이전에 비하여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이 높아짐

(4) 게다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서둘러 선고할 수 있음 ⇨ 그 선고 이후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현재의 결정에 대법원이 기속되는 듯한 매우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검토]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 ⇨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가)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 있음

## 5. 후속 조치

가. 반발 세력 무마

(중략)

나. 본안 사건 처리

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어차피 1심 선고도 8개월가량 소요되었음

(가) 2013. 10. 24. 접수 ⇨ 2014. 6. 19. 선고

(나) 곧 법원 정기 인사 시기도 다가옴 ⇨ 해당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판사) 교체(법원장 발령) 가능성 높음

(2)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음

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으로 보임

(1)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 본안에 관한 화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가능 ⇨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의 대승적 해결 시도 이미지 과시

(가) ‘전교조는 문제가 된 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여 법내 노조로서 요건을 충족한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와 같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조정안 제시

(2) 만일 결국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가) 결정문에 결정 이유가 기재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

(3)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가)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다. 협조 요청 사항

가)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1)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 법무부의 반대 무마

(2)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적극 협조 ⇨ 내년 초 예정

(3) 재외 공관 법관 파견에 적극 협조 ⇨ 외교부의 긍정적·전향적 태도 유도

(4) 한정위헌결정 관련 적극 협조 ⇨ 헌재와 의견 대립 시 협조 요청

(5) 법관 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협조 ⇨ 약 30명의 추가 증원 등에 국회·기재부의 적극 협조 유도 [끝]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對 外 秘

2015. 7.

기획조정실

## 라. 과거 왜곡의 광정

- (1)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가) ①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① 아래 ① **과거사 정립**,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나) ②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① 아래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 **노동**, ⑤ **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2) ① **과거사** 정립
  - (가)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 (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①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다)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 ①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3) ㉓ **자유민주주의** 수호

(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  
⇒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

(나) **이석기 전 의원 사건**

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다)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①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㉔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가)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나) 한편, 첨예한 갈등·대립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당한 결론이라도 이를 도출하는 과정·절차가 소홀하면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대법원은 공개변론 중계방송 등을 통하여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모색하였음**

(다) **통상임금 사건**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이 **최소한의 혼란 속**

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임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라) 키코 사건

① 금융기관과 기업이 침해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역시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인 노력을 통하여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①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5) ④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가)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나) KTX 승무원 사건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 정리해고 사건

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라) 철도노조 파업 사건

①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6) ⑤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가)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함 ⇨ 역시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함

(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①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 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함**

**☑ 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

▶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

[끝]